

◎ 국제대회 포상금 지급규정

제정 2012. 1. 17.
개정 2014. 8. 7.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의 국제대회 유공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“포상금”이라 함은 장애인체육 유공자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권장하는 지급금을 말한다.

제 3 조(대상)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선수 및 경기단체(이하 “선수 등”이라 한다)를 대상으로 지급한다.

1. IPC(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)가 공인한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입상선수
2. IPC(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)가 공인한 유형별·종목별 세계선수권 대회,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입상선수
3. 기타 공인 국제대회 입상선수

제 4 조(메달산정 기준)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획득한 메달수의 산정기준은 제3조에 규정된 대회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수상 메달에 한한다.

② 단체경기(개인경기의 단체전 포함)는 최종적으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 한한다.

제 5 조(포상금 지급) 포상금 지급은 별표와 같다.

제 6 조(지급시기) 포상금의 지급시기는 대회 종료 후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한다.

제 7 조(지급액 조정)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·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 8. 7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[별표] <개정 2014. 8. 7.>

국제규모대회 입상 포상금 지급기준

(단위 : 만원)

대 회 명	구 분	포 상 기 준		
		1위	2위	3위
IPC 공인 올림픽대회 농아인올림픽	개인 및 단체	200	150	100
IPC 공인 유형별·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(4년 주기), 아시아경기대회	개인 및 단체	150	100	50
IPC 공인 유형별·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(2년 주기)	개인 및 단체	100	50	30
기타 공인국제대회	개인 및 단체	30	20	10

※ IPC(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) :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